

의안번호	2203868
의 퇴 인	황명선의원
회 답 일	2024.10.30.
추계번호	24D36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영외거주군인에게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중 현금과 현물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8,505억원(연평균 1,70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영내자급식비 증가	1,392	1,412	1,433	1,454	1,475	7,166	1,433
영외자급식비 공제 면제	257	262	268	273	278	1,339	268
합계	1,650	1,675	1,700	1,727	1,754	8,505	1,7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3조(실비변상)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함. 다만,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음(제3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3조(실비변상)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영외거주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 발생
 - 급식 관련 예산은 영내급식 시 식자재조달을 위한 영내자급식비와 영외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영외자급식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영외거주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중에 현물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영내급식의 증가에 따라 영내자급식비를 추가지급하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며, 영외거주자가 영내급식후 사후공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
 - － 다만, 최근 영외거주자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중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뿐만 아니라 평시 영내급식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추계에서는 영외거주자가 영내급식후 사후공제 금액 전체를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영내급식한 것으로 가정함
- 추계에서는 2024년 예산편성 급식비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7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산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영외거주군인의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중 영내급식에 따른 영내자급식비 증가

- (훈련 및 부대행사 등에 따른 영내급식 증가 급식일 수) 국방부가 제출한 훈련 및 부대행사 등으로 영외거주자가 영내급식을 하게 되어 추가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되는 연간 급식일 수는 매년 약 840만일 수준임

[표 2] 영외거주군인의 훈련 및 부대행사에 따른 영내급식일 수 추정

(단위: 일)

	2026	2027	2028	2029	2030
급식일 수	8,409,809	8,409,809	8,409,809	8,409,809	8,409,809

자료: 국방부

□ (당직에 따른 영내급식 증가 급식일 수) 2024년 8월 기준 당직직위 수 7,048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2026~2030년까지의 당직직위 수를 추정²⁾

- 평일 당직시 2식, 휴일 당직시 3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식일 수를 추정

[표 3] 국방부 당직직위 수 변화

(단위: 개)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연평균 증감률
당직직위 수	8,230	7,673	7,568	7,644	7,577	7,048	-3.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국방부 당직근무에 따른 급식일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개, 일)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당직직위 수(A)	6,624	6,422	6,226	6,036	5,851	-3.05%
평일	일수(B)	246	246	246	246	-
	급식일 수/일(C)	0.67	0.67	0.67	0.67	-
휴일	일수(D)	119	119	119	119	-
	급식일 수/일(E)	1.00	1.00	1.00	1.00	-
당직근무에 따른 급식일 수(=A*(B*C+D*E))	1,874,644	1,817,406	1,761,916	1,708,120	1,655,967	-

주: 1. 급식일 수는 1일 3식을 기준단위로 하며, 평일 당직근무시 2식을 제공하고 있어 2/3로 산정함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참고로 2024년 국방부 예산상 당직직위수는 6,083개임

[표 5] 영외거주군인의 훈련, 부대행사 및 당직근무에 따른 영내급식일 수 추정

(단위: 일)

	2026	2027	2028	2029	2030
훈련 및 부대행사	8,409,809	8,409,809	8,409,809	8,409,809	8,409,809
당직근무	1,874,644	1,817,406	1,761,916	1,708,120	1,655,967
합계	10,284,453	10,227,215	10,171,725	10,117,929	10,065,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영내급식 단가) 영내급식 단가는 2024년 예산 기준 1일에 13,000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영내자급식비 단가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영내자급식비 단가	13,578	13,863	14,155	14,452	14,7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영외거주자가 훈련 및 부대행사,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급식을 할 경우, 영내급식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7,166억원(연평균 1,433억원)으로 추계됨

[표 7] 영내급식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영내자급식비 증가	1,392	1,412	1,433	1,454	1,475	7,166	1,4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영외거주군인의 영외자급식비를 사후공제하지 않는데 따른 재정수입 감소

- 현행법령에 따라 영외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한 후 영내급식하는 경우 급식비를 사후공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영외거주자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 달에 영내급식한 횟수만큼 봉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나, 2022년 이후 영외거주군인이 영내급식 횟수만큼 부대통장으로 입금하여 이를 영내급식을 위한 식자재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영외자급식비 사후공제 금액은 2021년 1,031억원에서 2022년 237억원으로 감소

[표 8] 영외거주군인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제 총액	859	1,004	1,031	237	245

자료: 국방부

- 영외거주군인의 영내급식 후 영외자급식비를 사후공제하지 않는데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2022~2023년 공제금액의 평균값으로 가정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
 - 영외거주자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중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뿐만 아니라 평시 영내급식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평시 영내급식 비중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추계에서는 영외거주자가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전체를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영내급식한 것으로 가정하고 2023년 사후공제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9] 영외거주자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면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추정: 2026~2030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영외자급식비 공제 면제	257	262	268	273	278	1,339	268

자료: 국방부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영외거주군인에게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중 현금과 현물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까지 8,505억원(연평균 1,701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영내자급식비 증가	1,392	1,412	1,433	1,454	1,475	7,166	1,433
영외자급식비 공제 면제	257	262	268	273	278	1,339	268
합계	1,650	1,675	1,700	1,727	1,754	8,505	1,7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영외거주자의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중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뿐만 아니라 평시 영내급식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추계에서는 영외거주자가 영내급식 후 사후공제 금액 전체를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영내급식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